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붙임참조

4. 검 토 의 견 : 붙임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사유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일원화 하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던 야성동・식물 조항이 정비되고, 「자연환경보전법」 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여 통합 관리코자 정비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금지행위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마.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출입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2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 왔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년 2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 개정하려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경관까지 포함한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토록 하였으며,
- 같은 조례의 규칙으로 규정했던 금지행위를 조례로 규정하고
- 보호 야생동·식물의 지정, 보호구역 지정, 출입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과태료 조항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명과 용어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여 이를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더불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 및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됨.

○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이 2005년 2월7일 제정되고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야생동・식물에 대한보호를 강화토록 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 관련 별도의조례를 제정치 않고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통합・관리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법령 개정시는 이를 빠른 시일내에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